

제273회 고령군의회 정례회  
제 3차 본회의, 2021.12.08(수)10:00

고령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  
검 토 보 고 서



전 문 위 원

# 「고령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」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배호임 의원 대표발의

## 2. 제안이유

- 고령군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보건위생물품 지원을 통해 여성청소년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보편적 여성 인권을 증진하기 위함

## 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1조, 안 제2조)
- 나. 보건위생물품 지원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3조)
- 다.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4조)
- 라. 중복지원 금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5조, 안 제6조)

4. 관계법령 :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5조,

「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」 제3조2,

## 5. 검토의견

○ 본 제정조례안은,

-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34조 제2항과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5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우리 군 여성청소년의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사업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그 근거와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.

○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
- 안 제1조는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사항을

안 제2조와 제3조는 지원내역 및 방법에 관한 규정하고 있으며, 또한 여성청소년의 나이를 ‘만9세 이상 만18세 이하’의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빨라진 초경 연령을 반영하여 고등학교 졸업시까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적절한 연령기준이라고 판단됩니다.

안 제5조, 안 6조는 지원을 중복 방지와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.

○ 검토결과,

- 본 제정조례안은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34조 제2항과 「청소년복지지원법」 제5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우리 군 여성 청소년의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사업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,
- 여성청소년이 더 이상 경제적 상황에 따라 보건위생물품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도록 보편적 복지의 대상으로의 사회적 인식 개선과 안전하고 건강하게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취지로 사료됩니다.
- 다만, 보건위생용품 지원에 따른 추가 재정부담이 수반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소관부서 및 관련기관 등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
  
-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